

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전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전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생환, 김제리, 김혜련,
김화숙, 박순규, 오한아,
유·용, 이준형, 최기찬,
최·선, 홍성룡, 황인구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.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(제7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유아교육법, 초·중·등교육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제1호의 “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”를
“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·학습활동으로 시간적·공간적 제약
에 구애 받지 않고”로 하고,

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교육용 스마트 기기”란 교수·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테블릿PC 또는 노트북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)

-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원에게 소속 학교의 장이 지정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때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,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, 학생 및 교원이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받은 학생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원격수업”이란 <u>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,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,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·학습 활동으로 시간적·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-----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교육용 스마트 기기”란 교수·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테블릿PC 또는 노트북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.</u></p>
<p><신설></p>	<p><u>제7조의2(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)</u></p> <p>① <u>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원에게 소속 학교의 장이 지정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때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,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, 학생 및 교원이 기기를 소지할</u></p>

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받은 학생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